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개정 2019. 10. 2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공급유형	일반공급 신청자 []		특별공급 신청자 []
	청년 []	신혼부부 []	청년 [] 신혼부부 []
신청내역	주택위치	전용면적(m ²)	
	주택유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6-3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비)배우자 (서명 또는 인)

리스트안암 사업주체 『주식회사 브이인마크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사투자회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 이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개정 2020. 5. 27.>

서약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서약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서약 내용	일반공급 신청자 []	청년[]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임.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내국인임. 3.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임	
		신혼부부[]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임.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내국인임. 3.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임. 4.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임. 5. 신혼부부는 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임.	
	특별공급 신청자 []	청년[]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임.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내국인임. 3.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임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함. 가.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나.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신혼부부[]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임.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내국인임. 3.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임. 4.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임. 5.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6. 신혼부부는 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임.	

본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 신청이 위 성 내용과 동일함을 서약합니다. 향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예비)배우자

(서명 또는 인)

리스트안암 사업주체 『주식회사 브이인마크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귀하

유의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제4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 본인 및 본인의 세대에 속한 자 전원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서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을 임차인의 요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의무준수 협약서(임차인)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아래 임대차 물건지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아래의 임차인 자격을 모두 갖추었음은 물론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주택소유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사실이 판명된 경우 즉시 임대차계약이 취소됨은 물론 본인은 임차중인 주택에서 즉시 퇴거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협약합니다.

- 아 래 -

항 목	내용
가. 임대차 물건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6-3, 리스트안암 (호)
나. 우선모집 임차인 자격	무주택 청년(만19~39세, 신혼부부 포함), 무주택 고령자(만65세 이상) ※신혼부부.고령자일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호서식] <신설 2018. 7. 17.>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현황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특별공급유형		청년 []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가구총계							원
	세대주 성명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원	
	세대원 성명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원	
	세대원 성명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원	
	세대원 성명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현황을 제출합니다.

이
이
이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비)배우자 (서명 또는 인)

리스트안암 사업주체 『주식회사 브이인마크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세대주와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비사업자 확인각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용)

신청자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확 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 성년자만 기재			-	
			-	
			-	
			-	
			-	
			-	

본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구비서류 중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사업자등록상태 검색결과 사업자임이 판명될 경우(허위서류 제출) 당첨 취소 또는 임대주택 공급 계약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민간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앞면)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 · 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 금융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신용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보험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서류심사 대상자 인적사항 – 홈페이지 [당첨 조회] 메뉴에서 확인 후 기입하여 주세요.

호수(예비번호)			세대타입		
신청자명	신청자	(예비)배우자	생년월일	신청자	(예비)배우자
연락처	신청자:		이메일		
	(예비)배우자:				

■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자산종류	해당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현금자산	예 ☐		원		본인
		아니오 ☐				
	임차보증금 (세입자 작성)	예 ☐		원	[임차인]	본인
		아니오 ☐			[임차인]	
	주식/증권	예 ☐		원	[주주(보유자)]	본인
		아니오 ☐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원	[출자자]	본인
		아니오 ☐			[출자자]	
	분양권	예 ☐		원	[수분양자]	본인
		아니오 ☐			[수분양자]	
부채	현금부채	예 ☐		원		본인
		아니오 ☐				
	임대보증금	예 ☐		원	[임대인]	본인
		아니오 ☐		원	[임대인]	

※ 기타자산 및 부채가 없을 시에도 보유여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 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리스트안암 사업주체 『주식회사 브이인마크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사투자회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임차인)

집주인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 이용 목적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임차인 상담 및 자격 확인, 임대차 계약관리 등 집주인 임대주택사업과 관련된 업무
- 수집 · 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주택소유 정보, 건강(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집주인 임대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폐지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사업 폐지일 후에는 법령상 의무이행 및 공공기관 등의 정책자료 활용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업무를 재위탁받은 금융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임대차 계약관리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단, 주민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해 제공한다), 기금융자 및 임대차 계약 관리와 관련하여 수집 · 이용한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정책수립,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민등록기준)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고려대역 청년안심주택 리스트안암은 고객관리, 계약서 작성 및 관리 등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등
2	개인정보 수집방법	고려대역 청년안심주택 리스트안암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직접 입력을 통한 등록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수집은 부동산 임대를 위한 매물관리, 부동산 임대를 위한 계약서 작성,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거래의 신고)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사유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 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일 정한 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 근거 : 공인중개사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보존기간 : 5년
5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에이치파트너즈(주), 삼성물산(주), DNK, KFNS(주) 등 ▷ 이용목적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심사 및 당첨자 선정, 임대차 계약 및 임대관리, 임대 마케팅, 임대차계약신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입주고객서비스 등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등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본인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인의 임대주택공급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 계약(갱신계약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자
(예비)배우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무소득 확인서(해당자만 작성)

무소득 확인서

신청유형		일반공급 ☐		특별공급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e-mail			
소득여부		있음 ☐ 없음 ☒		
내용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계약해지(해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